

사업 연도	. . . ~ . . .	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I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

① 과목 또는 사항	코드	② 기초잔액	당기 중 증감		⑤ 기말잔액	비고
			③ 감소	④ 증가		
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	1. 자본금	01				
	2. 자본잉여금	02				
	3. 자본조정	15				
	4. 기타포괄손익누계액	18				
	5. 이익잉여금	14				
	계	20				
7.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(을)(병) 계	21					
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	8. 법인세	22				
	9. 지방소득세	23				
	10. 계(8 + 9)	30				
11. 차가감 계(6+7-10)	31					

II. 결손금(이월결손금 및 당기 결손금) 계산서

1. 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

⑥ 사업 연도	결손금				감소내역					잔액		
	발생액			⑩ 소급 공제	⑪ 차감계	⑫ 기공제액	⑬ 당기 공제액	⑭ 보전	⑮ 계	⑯ 기한 내	⑰ 기한 경과	⑱ 계
	⑦ 계	⑧ 일반 결손금	⑨ 배분 한도초과 결손금 (⑨ = ⑮)									
계												

2.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(배분한도 초과결손금)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

⑲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	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	㉑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	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	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			
				㉓ 합계 (㉓=㉕+㉖)	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		㉗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(㉘일반결손금으로 계상) (㉑≥㉒의 경우는 "0", ㉑<㉒의 경우는 ㉒-㉑)
					㉔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	㉕ 이월결손금 (㉕ = ㉑) ㉑과㉒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	

III.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

㉗ 과목 또는 사항	㉘ 코드	㉙ 전기말 잔액	기초잔액 수정		㉚ 수정 후 기초잔 액 (㉙+㉛-㉜)	㉛ 비고
			㉛ 증가	㉜ 감소		

작성 방법

1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

- 가. ② 기초잔액란: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자본조정, 기타포괄손익누계액,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,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III.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㉓란의 수정 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③ 당기 중 감소란 및 ④ 당기 중 증가란: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.
- 다. ⑤ 기말잔액란: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라.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: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,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- 마. 7.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+(병) 계란: “별지 제50호서식(을)”의 합계액과 “별지 제50호서식(병)”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- 바.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: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등을 적습니다(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).
- 사. 11. 차가감 계: 6.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.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+(병) 계의 합계에서 10.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.

2. 결손금(이월결손금 및 당기 결손금) 계산서

- 가. ⑧ 일반 결손금란: 사업연도별 세무계산 상 이월결손금 발생 총액(동업자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‘배분한도 초과결손금’ 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‘배분한도 초과결손금’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)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순서대로 적습니다.
- 나. ⑨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‘배분한도 초과결손금’ 중 ㉕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※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.
- 다. ⑩ 「법인세법」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 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.
- 라. ⑫ 기공제액란: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.
- 마. ⑬ 당기공제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,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의 ㉞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- 바. ⑭ 보전란: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,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.
- 사. ⑰ 기한경과란: 공제기한(2019. 12. 31.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, 2020. 1. 1.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)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잔액을 적습니다.
- 아. ⑱ 계란: 이월결손금 ⑪ 차감계에서 ⑯ 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 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자. ⑲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‘배분한도 초과결손금’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- 차. 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‘배분한도 초과결손금’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‘배분한도 초과결손금’ 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.
- 카. ㉑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‘배분한도 초과결손금’ 을 적습니다.
- 타. 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란: ‘배분한도 초과결손금’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[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]의 ㉞란 음수(△) 금액을 적습니다.
- 파. ㉔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: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- 하. ㉕ 이월결손금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㉑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거. ㉖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란: ㉒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㉑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(㉒란의 금액에서 ㉑란의 금액을 뺀 금액)을 적습니다.

3.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

- ㉗ 과목 또는 사항란 ~ ㉘ 수정 후 기초잔액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. 작성 방법은 “1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” 내용과 같습니다.

작성요령

1. 본 서식은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.
2. ②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.
3. ③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.
4. ④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(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을 포함합니다)을 기입하고 손금가산유보분은 △표시 기입합니다.
5. ⑤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.
6.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50호서식(갑)]에 옮겨 적습니다.
7. 비고란에는 과목 또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보내역 등을 필요시 기입합니다.

작성 방법

1. 본 서식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의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.
2. ①은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.
3. ②는 해외현지기업의 법인명을 기입합니다.
4. ③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출자의 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.
5. ④ 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출자의 증가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.
6. ⑤ 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출자의 증가로 처분된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가산 출자의 증가분은 △표시 기입합니다.
7. ⑥ 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출자의 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.
8. ⑦ 증감사유를 기재합니다. [ex. 이전소득금액 통지서(출자의 증가)를 수령하는 경우,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,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]
9.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(을)[별지 제50호서식(을)]의 합계란의 금액과 합산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50호서식(갑)]의 “7.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(을)+(병) 계” 에 적습니다.